PIC/CFM 의 직원 질병 관련 결정 지침

본 흐름도를 사용하여 ***진단되지 않은*** 질환을 가진 직원이 음식을 통해 질환을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장에서 배제되거나 제약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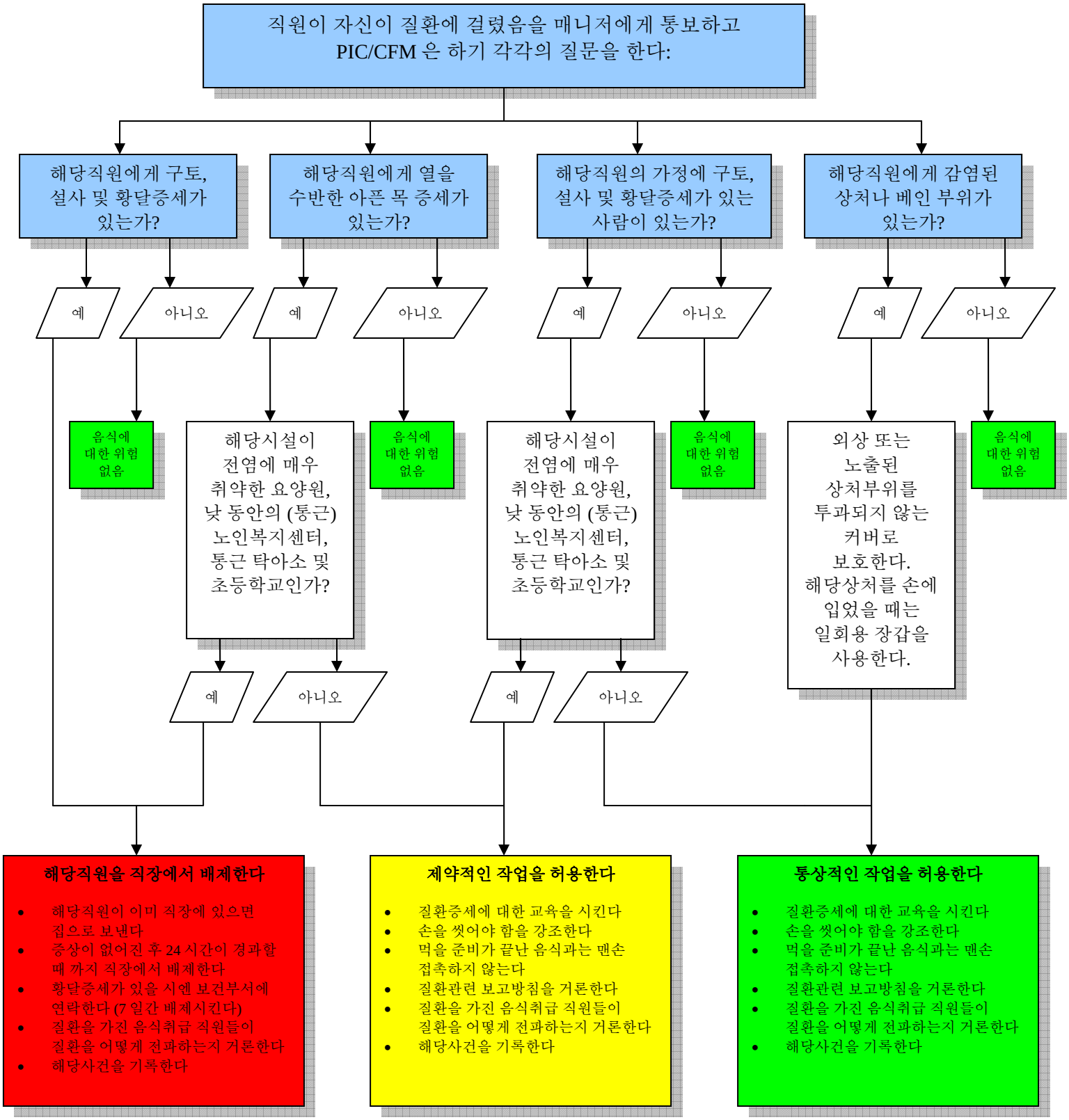

음식을 취급하는 직원이 Norovirus, *E.coli* (대장균) O157:H7, *Shigella* (이질균), Hepatitis A virus (A 형 간염 바이러스), 또는 *Salmonella* Typhi(장티푸스균)이 있음이 **진단되었음**을 (또는 자신의 가정에 본 질환 중의 하나라도 가진 것이 진단된 사람이 있을 시엔) 통보할 시엔 Fairfax 카운티 보건부(Fairfax County Health Department)의 음식안전과(Food Safety Section)에 즉시 연락을 취하여 (703-246-2444) 해당지침을 받는다.